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4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65,257,540원, 지방교육세 258,358,010원, 농어촌특별세 323,58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5. 11.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 안에 있는 [redacted]북 [redacted]군 D 공장용지 83,386.4㎡를 매수하여 2017. 6. 30. 그 지상에 태양광 셀·모듈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7. 8. 23.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B는 2018. 11. 1. E 주식회사에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됨과 동시에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변경됨으로써 F에게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승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신축 후 2년 안에 B로부터 F에게 이전된 것을 들어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10. F에 대하여 B가 감면받았던 취득세 5,365,257,540원을 추징하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된 지방교육세 258,358,010원, 농어촌특별세 323,580,520원을 부과(이하 위 추징 및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일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20. 1. 6. F을 흡수합병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특례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서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매각·증여'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민법상 매각이란 일정 대가를 받고, 증여란 대가 없이 어떤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한 재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 즉,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반면에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를 전부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하나의 회사만 존속시키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시키되, 소멸되는 회사의 법률상 지위가 존속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됨으로써 소멸되는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의무 역시 존속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에게 일괄하여 이전되는 것 즉,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매각·증여와 합병은 그 법률적 성질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인 B로부터 존속회사인 F에게 이전된 것을 들어 위 지방세특례법 규정에서 말하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4항이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것은 그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단지에의 기업 입주와 그 후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고,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당해 부동산을 조기에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이나 세제상 혜택만을 누린 채 당초의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원칙으로 돌아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합병은 B와 E 주식회사가 보유한 사업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병 후에도 F이 이 사건 공장에서 당초의 용도대로 태양광 셀 · 모듈을 제조하면서 [redacted]군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병 후에도 위 지방세특례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나 F이 위 규정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 했던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